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

제출년월일 : 1998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.

□ 제안이유

()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"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"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, 향후 전자상거래시스템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

() 중앙부처장관의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()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신설

() 제6조 제1항 내용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

□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□ 관계법령발췌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중 "내무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 (업무의 위탁)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·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
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위탁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